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기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700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1일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용호, 김인제,
김종길, 문성호, 옥재은,
윤종복, 이민석, 이종환,
이효원, 황유정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7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37조(감독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37조(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<u>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 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 |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 의무 규정을 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